〈별표 6〉

상시계약집배원 특별수당 급수별 지급기준

(제91조제1항 관련)

구분 \ 급	1급	2급	3급
등급구분 기 준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에 있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상시계약집배원 (도농복합 시의 경우 집배센터가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1급 지역 외의 인구 10만 이상 시지역에 있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상시계약집배원 (도농복합 시의 경우 집배센터가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1급 및 2급 지역 외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상시계약집배원

※ 인구의 기준은 지급 전년도 각 시·도 발행 최근 통계연보에 의함